

'9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
심사 보고서

1995년 2월 11일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4일 삼척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4일
다. 상정일자 : 제2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총무위원회 ('95. 2. 11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회계과장 장영진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) 및 삼척시
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
20필 11,056㎡, 건물취득(신축) 3동 4,293㎡, 토지
처분 1필 92㎡에 대한 변경 관리계획승인을 드하여
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
자 함.

나. 주요골자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토 지			건 물		
	필수	면 적	추정가액	필수	면 적	추정가액
취득	20	11,056	460,009	3	4,293	4,452,000
처분	1	92	71,392	-	-	-

2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원표)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1차 변경분으로,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,
- 하장면 청사부지 매입건은
 - '92년도 하장면 청사신축 당시에 사유지 일부에 소유자 의 사용동의로 청사를 신축하여 '92 ~ '94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결을 득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, 토지 소유자와 보상 미협의로 매입치 못하여 '95년도에 계속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,
- 노곡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건은
 - '80년도에 연면적 55평으로 건축된 현 노곡면 청사가 면청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·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심각하여집에 따라 기존의 사유지 (복지회관 부지, 노곡면 하월산 151-2, 대지 1,557㎡)에 인접된 하월산 151번지 일대의 토지(3,587㎡)를 확보, 청사를 신축(지상 2층, 면적 660㎡) 하여 복지회관과 연계 이용하면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시립박물관 건립 및 잔여부지 매입건은

- 전통문화도시 기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(삼척시 성남동 164-8, 전, 1,100 m²) '95관리계획에 반영 박물관건립(지하1층, 지상2층, 면적 1,983 m²)을 목적으로 계획협의 취득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,

○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건은

- 원덕 복지회관 부지(원덕읍 호산리 242, 244번지 3,217 m²)와 인접된 호산 364번지, 답, 1,279 m²를 도서관부지로 선정 확보함은 향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회관과 공공도서관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대이리 주차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매입건은

- 통합시 전에 대이동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'94년 부터 매입을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 '95 관리계획에 반영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동굴 인접 12필지 3,547 m²를 협의 취득하므로서,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,

○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부지매입 건은

- 삼척시 농촌지도소의 시범포 기존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시범포와 인접된 균덕면 교가리 418-4번지 답 397 m²를 매입 확충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려는 것이며,

○ (구) 삼척문화방송 점유부지 매각처분 건은

- 삼척시 남양동 55-115번지, 대, 92㎡는 당초 도로부지였으나, 주위여건상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삼척문화방송 (주)이 브력 담장 울타리내의 실점유(대부)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 불하를 원하고,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불하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활용가치가 없으나 현 점유자에게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므로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하장면 청사부지 및 대이동굴 주차장부지 보상가를 금년에 조정해서 매입하는지?○ 삼척문화방송 점유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에 대한 대책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정가와 소유자 요구가격에 차이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음.○ 인근지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가격으로 추진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